

폐기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대책 건의(안)

현 황

1. 폐기물 관리법

○제정공포 : 법률 제3904호, 1986. 12. 23 공포

○시행 : 1987. 4. 1

○입법취지 :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폐기물(분뇨, 쓰레기, 산업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함.

○주요골자 :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2.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안)

○공고 : 환경청공고 제86-8호, 1986. 12. 26

○시행 : 1987. 4. 1

○주요골자 :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축산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 축산시설

시설의 종류	규 모	포함시설
돈사시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단, 특별청소지역에서는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 양돈시설

문제점

1. 축산업은 대부분 영세부업규모(돼지 500두 이하가 99% 이상)로서 축산업의 수익성을 고려해 볼 때, 동법 시행령(안)에서 규정한 대상 시설규모(돈사시설 200제곱미터 이상)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은 농촌의 현실

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1 참조).

2. 본 시행령(안)은 작금 농촌 경제 활성화 를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으로 간주되

고 있다.

3. 돈분뇨의 이화학적 성상으로 볼 때, 전국 토의 많은 경작지가 화학비료의 과용으로 산성화 등 지력유지가 곤란한 것을 감안하여, 자원을 위생공학적인 처리를 하여 폐기시키기보다는 농지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2).

표 1. 돼지 사육규모별 현황(1986. 12말 현재)

구분	사육규모(A)		500두이상(B)		비율% (B/A)	
	농가호수	사육호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돼지	262천호	3,347천두	595호	1,025천두	0.2	30.6

자료) 농림수산부

표 2. 돈분뇨의 비료 환산량

사양규모	구분	연간 배설량 톤	연간 이용하는 성분량			비료 환산		
			질소 kg	인산 kg	가리 kg	유안 (21%) kg	과석 (17%)	유가 (48%)
돼지 100두	분	128	538	410	576	2,562	2,412	1,200
	뇨	117	351	140	234	1,671	824	488
	계	245	889	550	810	4,233	3,236	1,688

자료) 양돈경영계획과 설계지표, 대한양돈협회, 1986. 262쪽

대책건의

1. 시행령(안)의 축산폐수 정화대상 시설규모를 200제곱미터(특별청소지역 1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특별청소지역 50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고, 양축가 자력공사에 의한 시설을 인정하여야 한다.

2. 1,000제곱미터 이하의 오수 발생원(축산배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도·조언·권고하여야 하며 벌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3. 정부에서는 축산폐수정화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하고 정화시설 설치 경비를 보조·융자하여야 한다.

4.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축사의 이전 등 가축사육을 제한 조치할 시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고 이전비용을 보조하며 철거보상을 하여야 한다.

5. 가축분뇨의 처리는 그 처리방법에 따라

시설 경비와 유지관리비용 및 유지관리 기술과 정화 효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간이처리시설을 인정하여야 한다.

- 저장 액비화 방법
- 매립처분법
- 퇴비화방법
- 토양침투 증산법
- 살수 여상법
- 산화구 방법
- 토지환원법
- 회석방류법
- 메탄가스 이용법
- 크로렐라 배양법
- 발효법